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2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29.

(3) 회 부 일 : 2026. 7. 30.

나. 제안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예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¹⁾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양기관 간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불송치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²⁾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한층 더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가정폭력범죄³⁾ 및 아동학대범죄⁴⁾의 경우는 이미 개정안과 유사하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⁵⁾ 위반 사건의 수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00건 중 1,342건(67.1%)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626건(31.3%)이 불송치되었으며, 연도별 불송치 비율은 2021년 33.1%, 2022년 31.6%, 2023년 30.8%, 2024년 26.4%, 2025년 34.7%로 나타났음.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관리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비밀누설 금지 위반,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수사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 중지
		책임송치		법정송치 (가정폭력· 이동학대 등)	합계(%)		
		구속	불구속				
2021년	350	9	216	9	234(66.9%)	116(33.1%)	-
2022년	415	5	252	17	274(66%)	131(31.6%)	10
2023년	409	10	236	25	271(66.3%)	126(30.8%)	12
2024년	402	255	4	30	289(71.9%)	106(26.4%)	11
2025년	424	11	246	17	274(64.6%)	147(34.7%)	3
합계	2,000	290	954	98	1,342(67.1%)	626(31.3%)	36

주1): 2025년 통계는 잠정 수치임.

주2): 책임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이고, 법정송치는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경찰청 제출, 재구성

□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으나 발의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짧아 국회 심사·의결 및 공포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보아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안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총 4건의 법률안([222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3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신고·진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사건송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수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경찰청·검찰청 등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노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동일한 취지로 함께 발의된 법률과의 정합성 및 제도 운영상 일관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모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이 검사 단계까지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처리 절차가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으며, 학대 사례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형사 절차 중심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음.

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진술 조력,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 관련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장애인학대 범죄의 특수성과 현장 돌봄 과정의 정당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건 송치로 인한 현장 종사자의 억울한 피해 방지 및 수사의 객관성과 실효성 담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